#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9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 박용갑·장종태·주철현

복기왕 • 박정현 • 박해철

황정아 · 강준현 · 박범계

이재관 • 이광희 • 양부남

김태년 • 오세희 • 박지원

민형배 · 염태영 의원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차등보조율의 경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이 한번 결정되면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시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등 재정상황을 고려토록 하여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적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그 의견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상황을 고려한 의견서"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준보조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수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2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u>그</u>	<u>각</u>		
<u>의견서</u>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포함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의견서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			
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		
준보조율 등) ①·② (생 략)	준보조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준보조		
	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		
	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u>정비하여야 한다.</u>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2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주도, <u>분야별 재</u>	분야별 재		
<u>정지출지수</u> , 그 밖에 대통령령	정지출지수, 국고보조사업에 대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한 사업수요-----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여 그 결 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 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u>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u>③</u> (생 략)